


# 제 2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9년 03월 07일 (목) 11:30

■ 개최장소 : 청담 한정식  
(부산시 연제구 연안로 1)

■ 기록자 : 추유진 (  )

사외복지  
법 인 **봉 생 사 외 복 지 외**

# 제 2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03월 07일(목) 11:30

2. 장 소 : 청담 한정식 (부산시 연제구 연안로 1)

3. 참 석 자 : 대표이사 정 화  
이 사 박 흥  
이 사 정 옥  
이 사 김 수  
이 사 김 환  
이 사 송 근  
이 사 추 옥  
이 사 김 환

4. 안 건 : 1. 2018년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2. 법인 및 산하기관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3. 법인 목적사업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안) 심의  
4. 정관 변경의 건  
5. 산하기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심의

5. 회의진행순서 : 가. 개 회 (성원보고)  
나. 대표이사 인사  
다. 전차회의록 처리  
라. 감사보고  
마. 부의안 심의  
바. 기타토의

## 6. 회의 진행 사항 및 내용

### 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4장 제28조에 의거, 이사회 의 개의정족수(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가 성립되었으므로 보고하다.
- 정연화 대표이사가 제22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됨을 선언하다.

### 나. 대표이사 인사

- 참석해 주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다.

### 다. 전차회의록 처리

- 추유진 과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을 처리하다.

### 라. 감사보고

- 2018년도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및 산하시설(봉생노인복지센터,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자성대노인복지관, 자성대노인복지센터) 회계의 수입과 지출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김승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는 감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가 물으니, 참석 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받기를 승인하여 감사보고를 마친다.

### 마. 안건심의

#### 제1안건.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 의결주문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의결한다.
- 제안이유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18년 사업실적, 2018년 결산 총괄표, 2018년 세입·세출 결산서
- 관련근거 : 1. 정관 제26조 【의결사항】 제5호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 법인 추유진과장 2018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자료를 통해 보고하니 세입 금297,076천원, 세출 금172,760천원, 이월금 금124,316천원이 되다.
- 봉생노인복지센터 추유진센터장이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자료를 통해 보고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 세입 금131,743천원, 세출 금129,757천원, 이월금 금1,986천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세입 금308,906천원, 세출 금221,717천원, 이월금 금87,189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세입 금74,969천원, 세출 금63,737천원, 이월금 금11,232천원, 식사지원사업 세입 금30,001천원, 세출 금30,000천원, 이월금 금1원이 되다.
-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최혜선센터장이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자료를 통해 보고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 세입 금187,188천원, 세출 금184,980천원, 이월금 금2,208천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세입 금215,369천원, 세출 금188,423천원, 이월금 금26,946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세입 금76,557천원, 세출 금61,196천원, 이월금 금15,361천원이 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관장이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자료를 통해 보고하니 세입 금3,439,080천원, 세출 금3,339,340천원, 이월금 금99,740천원이 된다.
- 자성대노인복지센터 이은숙센터장이 201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자료를 통해 보고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 세입 금122,434천원, 세출 금110,194천원, 이월금 금12,240천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세입 금363,915천원, 세출 금327,505천원, 이월금 금36,410천원이 된다.
- 대표이사가 2018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한 이사진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2018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대해 동의하므로, 승인하다.

## 제2안건. 법인 및 산하기관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 의결주문 :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 제안이유 : 2019년도 법인 및 산하기관 회계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서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예산과 결산

- 추유진 과장이 법인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금6,000천원 감소한 총액 금290,00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비지정후원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 봉생노인복지센터 추유진센터장이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은 금5,0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131,000천원이고, 장기요양서비스 금65,0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415,000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금5,500천원이 감소한 총액 금71,500천원이며, 이는 2019년 재가노인지원사업 보조금 증액 교부 및 장기요양수익을 증가를 반영한 편성임을 보고하다.

-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최혜선 센터장이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은 금1,0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188,000천원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금4,0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325,000천원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84,000천원이며, 이는 2019년 재가노인지원사업 보조금 증액 교부 및 장기요양수익을 증가를 반영한 편성임을 보고하다.

- 자성대노인복지관 이은숙 관장이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본예산 금3,361,420천원에서 추경예산 금573,780천원 증가한 총액 금3,935,200천원으로, 이는 특거초기적응지원사업 신규편성,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및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가교부에 따른 편성임을 보고하다.

- 또한, 자성대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통해 설명하니 재가노인지원사업은 금14,100천원이 증가한 총액 금154,400천원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금1,100천원 증액된 금437,500천원으로, 이는 재가노인지원사업 교부금 증액 교부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입 증액에 따른 편성임을 보고하다.

- 대표이사가 2019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사진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2019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므로, 승인하다.

제3안건. 법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안) 심의

1)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 구조변경의 필요성

: 정연화 대표이사가 복지회는 현재 대부분의 수익구조가 후원금에 치중되어 있고, 자부담 수입은 매년 현금 기본재산 정기예탁금 이자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낮은 자부담 수익률에 따른 법인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설명하다. 자부담 수익구조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현재의 수익에만 의존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법인 목적사업 수행 및 산하기관 목적사업 수행 지원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설명하고, 현재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일부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 운영을 안건으로 제시하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법인 수익사업 안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수익사업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여 없어야 함.
-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위배할 수 없음.
-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 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최혜선 센터장이 현재 부산시 중구 대청동 소재 봉생복지문화관은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말하다. 1층 북카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하여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설치기준에 준하여 사무실 및 교육실, 상담실 등으로 사용이 되면서 지역 노인복지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층 공간의 경우 전시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 용도는 있으나 사용에 있어 일시적 행사지원 외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이에 정연화 대표이사가 1층 공간에 대하여 법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다. 비효율적 공간을 활용하여 법인 임대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정기적인 임대 수익금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다.

- 박경흠 이사가 1층을 임대할 경우 진행되고 있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다. 이에 최혜선 과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행사의 경우 3층 봉생중구노인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충분히 수용이 되므로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 정인옥 이사가 수익금 발생에 대한 지출 용도를 질문하다. 이에 정연화 대표이사가 정관 제32조 수익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조항을 언급하여 임대수익금 은 법인 및 산하시설의 복지사업 전반에 지원될 것이며, 이는 법인설립 목적 및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지원이 될 것임을 강조하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본 안건에 대해 전원 동의함으로, 승인하다.

- 더불어 정관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해야 하는 바, 법인 관리 과장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다.

-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 끝에 참석이사 전원이 본 안건에 대해 전원 동의함으로, 승인하다.

#### 제4안건. 정관 변경의 건

##### 1)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 내용 변경

: 추유진 과장이 앞서 제3안건으로 제시되어 승인된 수익사업[임대사업] 관련하여 정관 제1장 총칙 및 제5장 수익사업에 명시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 가.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수익사업 운영 추가

##### 나.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 제1항 1. 임대사업

##### 다. [별지 1.]기본재산 목록표 정비

① 구분 : 목적사업용, 수익사업용 구분 표기

##### 마. 기타토의

- 참석자들은 논의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제반 행정업무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대표이사에게 당부하다.

- 대표이사가 논의되고 승인된 사항을 재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3시 30분이 되다.

상기 사항을 참석자 전원이 확인함.

2019년 03월 07일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 전원 날인하다.

대표이사 정



이 사 박



이 사 정



이 사 김



이 사 김



이 사 송



이 사 최



감 사 김



사외복지  
법 인 **봉 생 사 외 복 지 외**

# 감 사 보 고 서

사외복지  
법 인 동 생 사 외 복 지 외



#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와 봉생사회복지회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봉생사회복지회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집행 내용과 재무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 감사일시 :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17시
- 감사장소 : 봉생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 (부산시 동구 좌천남로9번길 1)
- 감사범위 : 회계 및 업무감사
-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1. 회계전반에 대한 증빙서류의 작성·정리 및 보관이 적절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에 책임감과 투명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2. 사업전반의 업무가 사업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시설별 후원금 이월금은 매년 증액되지 않도록 활발한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함.
- 2018년도 결산총액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이 월 금	비 고
법인회계	봉생사회복지회	297,075,919	172,760,050	124,315,869	
시설 회계	봉생노인 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131,742,710	129,756,871	1,985,839
		노인장기요양	308,906,240	221,717,463	87,188,777
		노인돌봄종합	74,968,964	63,736,635	11,232,329
		식사지원	30,000,531	30,000,000	531
	봉생중구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187,188,019	184,980,406	2,207,613
		노인장기요양	215,368,998	188,423,014	26,945,984
		노인돌봄종합	76,556,771	61,195,679	15,361,092
	자성대노인복지관		3,439,080,783	3,339,340,330	99,740,453
	자성대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	122,434,196	110,194,310	12,239,886
		노인장기요양	363,915,449	327,505,314	36,410,135
총 계		5,247,238,580	4,829,610,072	417,628,508	

감 사 : 김 환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대표이사 귀하